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제항해선박등에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와 출입·점검 규정을 정비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험해역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및 별표 1)

현행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위험해역”을 법률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설정 근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안전조치 및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 사유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근거(법 제11조의2) 및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신설에 따라 고위험해역 진입을 위한 법정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안전조치와 진입 제한 위반 시 면책가능 사

유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함.

다. 출입·점검 규정 정비(안 제6조 및 제6조의2, 별지 제1호서식 등)

출입·점검 규정(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출입·점검할 수 있는 분야를 선원대피처 설치여부에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라.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및 제7조, 제12조, 제18조, 별지 제20호서식)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적격성심사의 대행, 외국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4호 중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등”이라 한다)까지의”를 “위험해역까지의”로, “위험해역등을”를 “위험해역을”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경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경찰 함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스 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와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2.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 등이 현저한 위험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5. 선원·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임자가 개인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출입·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청

가.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점검 대상

가. 법 제9조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적정 여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선원대피처 설치·운영 적합 여부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심사대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위험해역등에”를 “위험해역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 쪽과 뒤 쪽 중 “선원대피처 출입·점검증”을 “출입·점검증”으로 하고, 뒤 쪽 중 “제12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을 각각 “제12조의2제1항” 및 “제6조의2제3항”으로 하며, 뒤 쪽 중 “선원대피처”를 삭제하고, 뒤 쪽 중 “국제항해선박·해양구조물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를 “국제항해선박 등, 위탁교육훈련기관, 심사대행기관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 출입하여 점검할 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의2제4항”으로 하고, “제6조제4항”을 “제6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험해역 등) ① ~ ② (생략)	<삭 제>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행보고) (생략)	제3조(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행보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항지에서 <u>위험해역</u> 및 <u>위험예비해역</u> (이하 “ <u>위험해역 등</u> ”이라 한다)까지의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이거나, <u>위험해역등을</u> 통항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운항경로가 변경된 경우	4. ----- <u>위험해역까지의</u> ----- ----- ----- ----- -- <u>위험해역을</u> -----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u>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원대피처 설치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3. 연안국 소속 무장 군인 · 경

<신 설>

찰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무장 경비원 등의 승선

4. 연안국 소속 군·경찰 합정
또는 연안국에서 허가한 업
체가 제공하는 근접호송서비
스 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
치와 준하는 조치로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3(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원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

2. 선박 등에서 응급환자가 발
생하여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진입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그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하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증
 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
 ④ 선박소유자등은 법 제12조
 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
 요한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6
 개월 이내에 그 명령 등 필요
 한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
 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지방해
 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는 경우

4.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 등이
현저한 위협에 처하였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피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
우

5. 선원·승선자가 고위험해역
진입 예정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선장 등 선박의 운항책
임자가 개인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고위험해역으로 진입
하는 경우

제6조(선원대피처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신 설>

제6조의2(출입·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출입·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제출 요청

가. 법 제9조에 따른 자체대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비상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출입·점검 대상

가. 법 제9조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해적행위 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적정 여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선원대피처 설치·운영 적합 여부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의 소속 직원 및 선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여부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의 교육

실시 여부

마.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
대행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심사대
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
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
려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선박소유자등, 제13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
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
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자

2.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
급 및 성명)

3. 점검 일시 및 이유

4. 점검 내용 및 범위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
항

③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
12조의2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기관 또는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 등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 ④ (생략)

⑤ 선장등은 위험해역등에 진입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훈련 결과를 위험해역등에 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건과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의 심사(이하 “적격성심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7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험해역에-----

-----위험해역에-----

-----.

제12조(적격성심사의 대행)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적격성심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분사무소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분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 ① --

제4항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연 락 처	(044) 200 - 5854